

창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624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6243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9. 5 선고 2019가소373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

변론 종결2020. 8. 20.

판결 선고2020. 9. 24.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9. 5. 선고 2019가소373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통틀어서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그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1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대 182m ² 중 원고 공유지분 55분의 52	1994. 4. 25.	2009. 10. 6.
2	2009. 10. 9.	-	
3	위 지상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53.92m ²	2005. 6. 21.	-
4	2012. 7. 16.	-	
5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202.4m ²	2011. 1. 6.	2011. 1. 12.

다. 원고는 2011. 1. 14. 22개월분(1990년 7월 ~ 12월, 2009년 9월 ~ 2010년 12월) 보험료 1,999,960원¹⁾ 을 피고에 납입하였다.

라. 원고 소유 토지가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마산합포구청은 그 보상금 명목으로 94,276,270원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년 금 제933호로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14,056,880원의 보험료 체납액이 있음을 이유로 위 공탁사건에

관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8. 29. 위 공탁금에서 압류금액 원리금으로 14,064,58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 14.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금 2,996,000원을 납입함으로써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 대한

14,056,880원의 미납 보험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뒤 이를 출급하였다. 원고는 2013년경까지는 건강보험증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위 미납 보험료

14,056,880원은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당하게 이중으로 부과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4,056,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또는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바,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처분 또는 그 근거가 된 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보험료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가입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한편,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한바,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시하였는지 여부 또는 이를 통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위 보험료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험료의 이중부과라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 을 제4, 8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1. 14. 납입한 보험료는 1990년 7월 ~ 12월분 및 2009년 9월 ~ 2010년 12월분인 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1991년 1월 ~ 2013년 7월분(2009년 9월 ~ 2010년 12월분 제외)까지의 보험료 체납액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1991년 1월분부터 2013년 7월분(2009년 9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 제외)까지의 보험료 채권은 아래와 같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중단되는 바(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을 제1, 13 내지 34,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1 내지 3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독촉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전산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하여 독촉고지 발송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1998년 12월 이전에도 그 이후와 유사한 빈도로 독촉고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독촉고지에 의하여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② 보험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이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 추가적인 조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민법 제174조 참조),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1994. 4. 25.자 압류(위 표 순번 1번)에 앞서 6개월 내에 있었던 최고에 의하여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재차 중단된다.

③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1994. 4. 25.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위 표 순번 1번)하기 시작한 이래 선행 압류의 효력이 유지 중인 상태이거나 또는 선행 압류가 해제된 날로부터 3년2) 이 경과하기 이전에 추가압류(위 표 순번 2, 3, 4번)를 하였고, 위 추가압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로 유지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또는 그 근거가 된 보험료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봉수

판사강희구

판사양철순

1) 원고는 이 부분 납입액이 2,996,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현금으로 1,999,960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이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2) 압류로 인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참조).